

1. 개정이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4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항공데이터의 종류를 정하고, 항공교통흐름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기 형식설계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강도, 비행특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국제기준(ICAO 부속서 6)에서 항공기에 장착하도록 하는 조종실 음성기록·조난위치 발신장치, 활주로이탈경고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조난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정확한 사고조사를 가능케 하고 ICAO 국제기준을 적기 이행함으로서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9조)

다.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또는 항공사간 사업을 양도·양수·합병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운항·정비규정 변경신고 및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62조)

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 승인서와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한 운항조건·제한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승인 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어, 30일 동안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운항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79조)

마. 무인자유기구의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으며,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식별표를 무인자유기구에 실을 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을 비행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11조제1항 및 별지 제123호서식)

바.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자 공개 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정보 공개 내용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수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함(안 제3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협의 예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24호의3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항공기가 활주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간에 관한 자료
2.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지상 이동 정보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설계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중량 및 평형 한계
2. 구조 강도
3. 동력장치의 작동
4. 비행 및 운용 특성
5. 그 밖에 감항성 또는 환경 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설계 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비행자료와 조종실 내 음성을 각각 25시간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항공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항공기 조난상황 발생 시 소유자등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매 1분마다 자동 발신하는 장치 1기 이상

7.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항공기로서 최대이륙중량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Runway Overrun Awareness and Alerting System, ROAAS) 1기

제2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6조의2(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 2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항공교통흐름관리석을 운영하여야 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 이외에 항공교통흐름의 관리에 관한 처리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0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운항체계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표32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62조제3항 중 “입증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2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를 “발급한”으로,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을 “운항조건”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가 적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의 식별표(가로 5센티미터 이상×세로 2센티미터 이상의 직사각형)를 탑재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

제3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수준에 관한 사항
- 별표 7 제1호아목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나목에 해당하는 헬리콥터 종류의 경우 자격증명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민간 헬리콥터 비행임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된다.

별표 33 제1호바목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국제	국내	소형	
바. 별표 36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범 12) 객실승무원업무교범(Cabin Crew Operations Manual)	○	○	해당될 경우 적용	-

별표 47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호에 따른 변경신청이 경미한 변경으로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제1쪽, 별지 제10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3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비행장소 및 회수장소	수수료 없음
	2.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가 적힌 불에 타지않는 소재의 식별표(가로 5센티미터 이상×세로 2센티미터 이상의 직사각형)를 탑재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311조제1항, 별표 47,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의 개정규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1항 및 별지 제1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중대한** [] **경미한** **형식설계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 항공기	종류	
	형식	형식증명번호
[] 발동기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제작일련번호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 프로펠러	제작자주소	
	감항증명번호 (항공기만 해당한다)	감항증명 유효기간 (항공기만 해당한다)
변 경 사 유		
비 고		

「항공안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제1항, [] 제19조제2항에 따라 [] **중대한**,
[] **경미한**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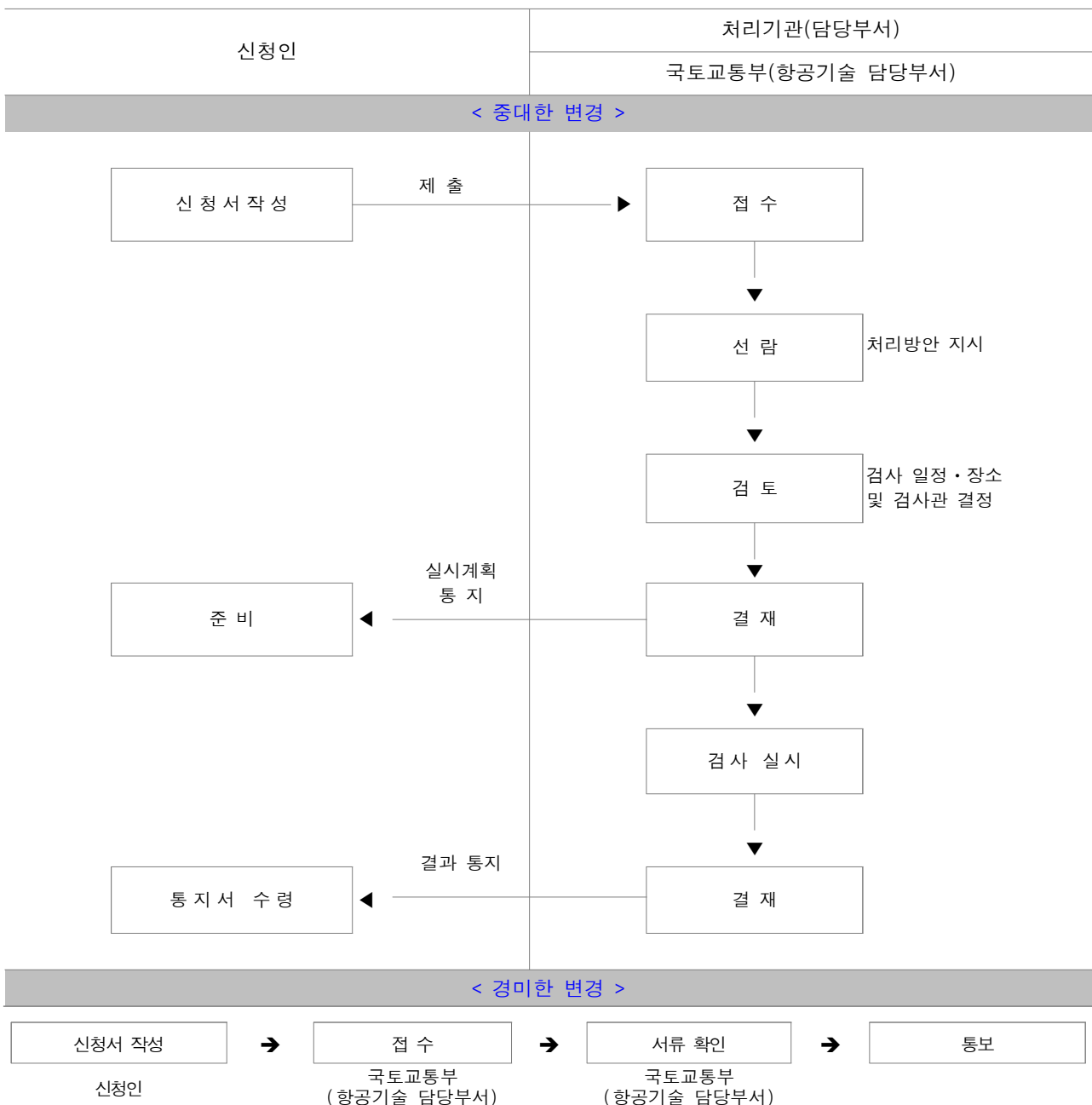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1. 형식증명서(copy of Type Certificate) 또는 제한형식증명서(copy of Restricted Type Certificate) 사본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3. 항공기 3면도(The three view drawing of that aircraft)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4.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The description of the engine design features,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limitations)(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Documents in specified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운영기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subject to the approved conditions in the Operations Manual)				
발행기관 연락처(Issuing Authority Contact Details)				
Telephone:		Fax:		E-mail:
운항증명 번호 AOC #	사업자 명칭 Operator Name, DbA Trading Name		발행일자 Date	발행자 서명 Signature
항공기 형식 Aircraft Model				
운항 형태 Type of operation				
☐ Passengers ☐ Cargo ☐ Other : _____				
운항 지역 Area of operation				
특별 제한사항 Special Limitations				
승인 · 허가사항 Specific Approval	Yes	No	세부사항 Description	비 고 Remarks
위험물 운송 Dangerous Goods	☐	☐		
저시정 운항 Low Visibility Operations				
Approach and Landing	☐	☐	CAT____, RVR____m, DH:____ft	
Take-off	☐	☐	RVR____m	
Operational Credit(s)	☐	☐		
수직분리축소구역운항 RVSM ☐ N/A	☐	☐		
회항시간 연장운항 EDTO ☐ N/A	☐	☐	Threshold Time: ____minutes Maximum Diversion Time: ____minutes	
성능기반항행요구구역운항 AR Navigation Specifications for PBN Operations	☐	☐		
특정통신성능요구구역운항 RCP specification for PBC	☐	☐		
특정감시성능요구구역운항 RSP specification for PBS	☐	☐		
감항성지속유지 Continuing Airworthiness	X	X		
전자비행정보 EFB	☐	☐		
기타 Others	☐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사업자명</u> (Name of Company)	
<u>승인서 번호</u> (Number of Validation)	
운항증명 승인서 Validation Letter of Air Operator Certificate	
This validation letter is issued on the basis of the Air Operator Certificate number ____ issued by the [State of Operator], and remains valid from the date of issue by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attached operation conditions and limitations, the approvals and restrictions of the Air Operator Certificate and its associated Operations Specifications remain vali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in so far as they are not repugnant to the Civil Aviation Act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approval may be cancelled, suspended or revok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any time if the conditions of the issue are not met by the foreign air operator or i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termines that such action is required in the interests of aviation safety. Date issued: Director of Flight Standards Division: (서명)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Operation conditions and limitations

<u>Number of Validation:</u>	
Company Registered name as Stated in the approval document:	
Address of Principal Place of Business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Trading name(s) if different than the Registered name stated on the Authorization, under which the operator may operate:	
The types of operations authorized:	
☐ Passenger and Cargo	☐ Scheduled Operations
☐ Passenger Only	☐ Charter Flight Operations
☐ Cargo Only	☐ Dangerous Goods
Destination airport(s) in <u>Republic of Korea</u> to be served:	
Aircraft types authorized for use:	
Validity period	
☐ From:	To:
☐ Pursuant to Article 28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this docu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spended or restricted.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30일 (30 Days)
Applicant	Name of State		
	Name of Company		
	Number of Validation		
	Name of Person in Charge		
	Address (Telephone: , FAX: , E-mail:)		
Company registered name as stated in the approval document			
Trading name(s) if different than the Registered name stated on the Authorization, under which the operator may operate			
The types of operations authorized: ☐ Passenger and Cargo ☐ Passenger Only ☐ Cargo Only ☐ Scheduled Operations ☐ Charter Flight Operations ☐ Dangerous Goods			
Destination airport(s) in Republic of Korea to be served			
Aircraft types authorized for use			
Planned date to operate			
Details of variation			
Reasons for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4, Article 279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Year) (Month)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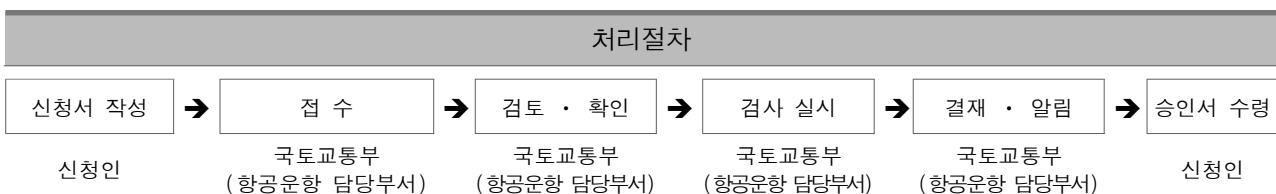
Applicant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s)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vidential Documents)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u> <u>류) 법 제2조제24의3사목에서</u>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u> <u>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u> <u>한다.</u> <u>1. 항공기가 활주로를 점유하고</u> <u>있는 시간에 관한 자료</u> <u>2.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u> <u>기 지상 이동 정보에 관한 자</u> <u>료</u> <u>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u> <u>정하여 고시하는 자료</u>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 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생 략) <u><신 설></u>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 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설 계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u>1. 중량 및 평형 한계</u> <u>2. 구조 강도</u>

<신 설>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

3. 동력장치의 작동

4. 비행 및 운용 특성

5. 그 밖에 감항성 또는 환경 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
설계 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 등) ① -----

.

----- 해당하며, 제19조제2
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

와 같다. 다만,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비행자료 및 조종실 내 음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 각 1기 이상

가. (생략)

<신설>

나. ~ 라. (생략)

4.·5. (생략)

<신설>

-----.

-----.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비행자료와 조종실 내 음성을 각각 25시간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 ~ 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4.·5. (현행과 같음)

6.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항공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

<신 설>

② ~ ⑤ (생 략)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
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
와 관련하여 같은 시간대에 규
정된 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
가 예상되는 공역에서 지역항행
협정이나 관련 기관 간의 협정
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

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
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항
공기 조난상황 발생 시 소유
자등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매 1분
마다 자동 발신하는 장치 1기
이상

7.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항공기로서
최대이륙중량 5천 7백킬로그
램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비행기에는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Run
way Overrun Awareness an
d Alerting System, ROAAS)
1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삭 제>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의 관리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운항증명을 발급 받은

<삭 제>

제246조의2(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83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 흐름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항공교통흐름관리석을 운영하여야 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등을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이외에 항공교통흐름의 관리에 관한 처리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

자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 다만 법 제90조제5항

----- . 다만 법 제90조제5항 제2호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운항체계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표32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11. (생략)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하
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

1.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⑤ (생략)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그 운항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6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

-- 자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발급한 -----
----- 운항
조건 -----

한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9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기구의 등급·수량·용도 및 식별표지

3. 비행장소 및 회수장소
4. 예정비행시간 및 회수(완료)시간
5. 비행방향, 상승속도 및 최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

----- 서류-----

-----.

<삭 제>

2.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가 적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의 식별표(가로 5센티미터 이상×세로 2센티미터 이상의 직사각형)를 탑재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

1.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u>고도</u> 6. <u>고도 1만 8천미터(6만피트)</u> <u>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u> <u>그 위치</u> 7. <u>그 밖에 무인자유기구의 비</u> <u>행에 참고가 될 사항</u> ② (생략)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① (생략) ② 법 제133조제3호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u><신 설></u> ③ (생략)	<u><삭 제></u>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수</u> <u>준에 관한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	--